



#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 예방접종 실시명령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제5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방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농 립 부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제5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방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및 닭의 소유자에게 각각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과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돼지콜레라의 경우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한다)로 한다.

2. 뉴캐슬병의 경우 : 전국의 부화장에서 부화되는 병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부화장의 소유자등으로 한다.

②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돼지 사육시설에서, 뉴캐슬병 예방접종은 부화장에서 각각 당해 예방약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뉴캐슬병의 2차 예방접종과 수입 병아리에 대한 예방접종은 당해 병아리를 입식한 소유자등이 실시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유자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공동방역사업실시단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하거나 해당 지역의 양돈·양계 등 생산자단체에게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한 사업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실시시간) 돼지콜레라 및 닭뉴캐슬병의 예방접종 실시시간은 이 고시 시행일부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예방접종실시대장 등) ①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등은 그 결과를 돼지콜레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에, 뉴캐슬병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축을 판매 또는 분양한 때에는 가축운반업자(돼지 수집상, 식육 판매업자, 식육가공업자, 도축업 영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또는 농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화장의 경우 병아리 수송상자에 예방접종 내역과 2차 예방접종예정일 등을 표시하여 출하하는 때에는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한 소유자 등은 교부일부부터 1년간 예방접종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공동방역사업실시단의 사실확인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접종 확인·지도감독) ①도지사는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공동방역사업실시단으로 하여금 관내 돼지 사육농가 및 부화장에 대하여 예방접종실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닭의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들을 찾아낸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의 확인은 서류검사 또는 혈청검사 방법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며, 혈청검사는 서류검사만으로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 및 예방접종확인서

2. 공동방역사업실시단운영요령(농림부 훈령 제882호, '96. 12. 31)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증명서

3.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교부한 수의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

4.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주사접종증명서

④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필요시 돼지 사육농가·부화장 또는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소유자들이 예방접종 사실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최종판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실시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 등) ①도지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처분한 도

지사는 당해 소유자들의 돼지 또는 닭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원인이 발생한 시점(예방접종 미실시 확인일자)부터 25일이 경과한 후에 혈청검사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소유자들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방접종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유자들에게 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또는 국가방역용 약품 등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제7조(도축장 출하 돼지 조치) ①가축운반업자 또는 소유자들이 도축을 목적으로 돼지를 출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류(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도축업 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축업 영업자는 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접종확인서
2. 제5조제3항제2호의 예방접종증명서
3. 제5조제3항제3호의 예방접종증명서
4. 제5조제3항제4호의 주사접종증명서

②검사원은 제1항의 증명서가 없는 돼지 또는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고 의심되는 돼지에 대하여는 도축을 제한하고 별표의 처리절차 및 방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은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검사신청서의 출하농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출하농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증명서 유효기간은 최종접종일(2차접종일을 말한다)로부터 150일(종돈과 후보돈은 1년)이내로 한다.

제8조(적용의 예외)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가축과 특수 사육·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1999년 3월 15일부터

제2조(적용특례)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도축이 제한된 돼지의 처리절차 및 방법(제7조제2항 관련)

1. 도축 제한사유 통보 및 혈청검사 실시

가. 검사원은 도축업 영업자로 하여금 도축제한과 관련 해당 돼지를 출하한 농가에게 도축제한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사원은 도축이 제한된 돼지에 대하여 농가별 출하 두수의 10%(최소 3두 이상)범위내에서 채혈을 실시하고, 가축운반업자 및 출하농가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와 함께 검사원 소속 가축방역기관에 혈청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혈청검사를 의뢰받은 가축방역기관은 24시간이내에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원과 해당 돼지를 출하한 농가 소재지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2.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절차

가. 가축방역기관의 혈청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원은 혈청검사 결과(음성 또는 양성)와 관계없이 도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나. 도지사는 가축방역기관의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농가의 사육중인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도지사 관할구역 외의 농가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가축방역기관은 해당 농가의 사육중인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돈방별로 사육두수의 10%(최소 3두이상)범위내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혈청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도지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치와 동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가축방역기관은 다목의 규정에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다목의 혈청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25일이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호  <h2 style="margin: 0;">예 방 접 종 확 인 서</h2>			
①농장·부화장명		②소재지	
③농장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④가축의종류			
⑤예방약종류	제품명:		제조업체명:
⑥접종방법	주사·분무·음수·기타	⑦접종두수	두수( )
⑧1차접종일자		⑨2차접종(예정)일자	
상기 가축은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소유자등): 성명			(인)

----- ( 간 인 ) ----- 절 취 선 -----

제 호  <h2 style="margin: 0;">예 방 접 종 확 인 서</h2>			
①농장·부화장명		②소재지	
③농장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④가축의종류			
⑤예방약종류	제품명:		제조업체명:
⑥접종방법	주사·분무·음수·기타	⑦접종두수	두수( )
⑧1차접종일자		⑨2차접종(예정)일자	
상기 가축은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소유자등): 성명			(인)